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方向

—開放化施策의 效果分析을 中心으로—

池 龍 熙
李 元 暎

目 次

- I. 序
- II. 技術導入의 實態
- III.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的 意味
- IV. 技術導入 自由化에 따른 主要爭點과 對策
- V. 要約 및 向後 政策方向

I. 序

최근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技術導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産業構造가 高度化됨에 따라 外國技術에 대한 需要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筆者：池龍熙：本院 招聘研究委員
李元暎：本院 研究委員

* 草案作成中에 열렸던 院內세미나에서 유익한 批評을 하여 준 참석자와 最終案을 읽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준 朴浚卿 博士에게 감사한다.

製品の 壽命週期上 과거에는 주로 成熟期の 제품을 생산했는데 반하여 技術水準이 높아 지게 됨에 따라 新製品 出現期나 成長期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技術이전에 있어서도 비공식적 수단 보다는 「라이센싱」이나 外國人直接投資 등의 공식적 수단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 것이다. 技術導入이 급증하게 된 다른 하나의 원인은 이에 대한 政府의 規制가 7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60년대에는 技術導入에 대하여 각종의 制限措置가 실시되었다. 로얄티 및 계약기간에 대한 規制가 있었으며 계약상 輸出禁止條項의 삽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5단계의 自由化措置를 거쳐 技術導入은 認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되었으며 契約內容에 대한 제한조치는 대부분 철폐되었다.

本稿의 目的은 技術導入 自由化措置 이후의 技術導入의 推移와 實態를 분석하여 그 경제적 波及效果를 밝히고 向後의 政策課題를 도

출하는 데 있다. 정책입안자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간에 自由化措置에 따른 重複技術導入, 落後技術導入, 商標權導入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技術導入에 따른 국내 技術開發의 沮害現象에 대하여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自由化措置 이후 技術導入의 推移와 實態를 분석하여 그 經濟的 波及效果를 밝히고 그간의 政策을 재조명하여 向後의 政策方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技術導入에 관한 政策의 變遷過程과 技術導入의 推移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技術導入의 産業別分布와 國別分布 및 外國과의 比較 등이 포함되어 있다. 第Ⅲ章에서는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代價支給 決定過程을 설명함으로써 技術導入에 관한 政策分析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技術導入이란 商品이나 資本財의 輸入과는 달리 不完全市場에서 契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의 이해가 정책수단에 대한 效果分析에 필수적이다. 第Ⅳ章에서는 그간에 技術導入의 自由化措置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爭點, 즉 重複技術導入, 落後技術導入, 商標權導入, 技術導入과 自

體開發의 關係 등을 분석하였으며 第Ⅴ章에서는 本文의 內容을 要約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모색한다.

Ⅱ. 技術導入의 實態

1. 關聯施策의 展開過程

우리나라에서 産業技術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라는 데 대한 反論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先進國型的 技術發展과는 달리 開途國의 技術發展은 그 핵심이 외국에서 開發된 技術을 어떻게 土着化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¹⁾. 國內의 研究開發도 그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재현하여, 이를 우리의 與件에 맞도록 消化·改良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간의 鐵鋼, 나일론, 石油化學, 自動車産業 등의 발전과정에 대한 研究에서도 外國技術의 消化·吸收가 이들 산업의 技術發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²⁾.

技術은 여러 經路에 의하여 移轉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는 商業的 去來에 의한 技術移轉, 즉 外國人 直接投資나 「라이센싱」을 통한 技術導入이라 하겠다. 이는 海外研修, 模倣, 外國購買者의 技術指導 등의 非公式의 技術移轉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는 政府의 役割이 불분명하나, 公式經路에 대해서는 政府가 直·間接의 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學者들간에는 技術導入도 일종의 새로운

1) Larry Westphal, Linsu Kim, and Carl Dahlman, "Reflections on Korea's Acquisi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World Bank Discussion Paper*, Rep. No. DRD 77, April 1984.

2) 邊衡尹, 「韓國鐵鋼工業의 技術蓄積」,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6.; 裊茂基, 「技術의 導入, 受容 및 擴散」,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3.; 朴宇熙, 「韓國에 있어서의 輸入技術의 吸收와 擴散에 관한 實證分析」,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6.; 李軫周, 「産業類型別 技術移轉 및 土着化過程과 方向」, 『技術移轉』, 韓國機械研究所, 1985. 1.

형태의 外國人直接投資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도 하나 技術導入은 資本導入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서 外國人直接投資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³⁾.

그러나 이들간에 類似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多國籍企業등 기업의 直接投資 動機中 가장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기업이 獨占하고 있는 技術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直接投資는 그 실질적 내용이 技術導入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外國人直接投資에서는 技術의 代價가 株式에 대한 配當金인 반면 技術導入에서는 로얄티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技術導入과 外國人投資間에는 相互代替性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政府의 政策에 의하여 外國人投資를 禁止하거나 規制하게 되면, 多國籍企業은 「라이센싱」의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競爭開途國 또는 先進國과 비교하면 技術導入은 활발하나 상대적으로 外國人投資는 부진하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책이 기술과 자본의 「패키지」 형태인 外國人直接投資보다는 이를 분리한 형태, 즉 技術導入과 借款을 선호한 때문이라 하겠다.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投資의 質을 規制하기 위하여 투자의 심사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投資制限 또는 禁止業種을 設定하는 등 각종의 제한을 해온 반면 技術導入에 대해서는 自由化措置가 빨리 이루어졌다.

60년대에는 技術導入에 대하여 각종의 制限

措置가 실시되어 로얄티는 賣出額의 3% 이하로, 契約期間은 3년 미만으로 규제하였으며 계약상 輸出禁止條項의 삽입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1978년 이래 5단계에 걸쳐 技術導入에 관한 規制가 완화되었다. 제 1 단계 조치는 機械, 造船, 電氣, 電子, 金屬化學, 纖維 등의 업종에 대하여는 先拂金 3萬달러 이하와 經常技術料 3% 이하, 契約期間 3년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定額이 10萬달러 이하의 계약인 경우는 自動認可對象으로 하였다. 1978년의 제 2 단계 조치는 原子力, 防衛産業을 제외한 全産業에 대하여 先拂金 80萬달러 이하, 經常技術料는 賣出額의 10% 이하, 契約期間은 10년 이하인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契約에 대하여는 自動認可對象으로 하였다. 1980년의 제 3 단계 조치는 全産業에 대하여 經常技術料가 賣出額의 10% 이하이던 계약기간이 10년 이하인 계약은 自動認可對象으로 함으로써 自動認可의 폭을 확대하였다. 1982년의 제 4 단계 조치는 모든 技術導入契約은 外資事業投資審査委員會 및 外資導入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主務部處의 自動認可事項으로 하였다. 1984년 제 5 단계 조치에서는 技術導入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技術導入은 商品輸入이나 外國人直接投資보다 自由化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技術導入은 의국기업의 國內進出手段 중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2. 技術導入의 推移

技術導入은 매우 급격하게 增加하고 있다. 年度別 技術導入의 推移를 <表 1>에서 보면

3) Charles Oman, *New Forms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Phase II, Discussion Guide for Experts' Meeting*, CD/R (83)7, OECD, 1983.

技術導入에 관한 自由化가 추진된 197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의 일시적인 不況期를 제외하고는 매년 技術導入의 件數 및 代價支給은 급증하여 1984년에는 總 432件的 技術이 導入되었으며 代價支給도 213百萬 달러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技術代價支給을 他國과 비교한

〈表 1〉 年度別 技術導入 認可 및 代價支給 現況
(단위: 件, 100萬달러)

	件 數	代價支給額
1962~66	33	0.78
1967~71	285	16.26
1972~76	434	26.51
1977	168	58.06
1978	296	85.07
1979	288	93.93
1980	222	107.25
1981	247	107.10
1982	308	115.69
1983	360	149.50
1984	432	213.23
合 計	3,073	1,043.35

資料: 財務部.

결과는 〈表 2〉에 나타나 있는바, 國民總生産 對比 技術代價支給은 比較對象인 8個國 중 가장 높다. 그러나 輸出入額 對比 代價支給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경제가 타국보다는 對外依存的이어서 國民總生産 對比 輸出入額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 하겠다. 〈表 2〉에서 보면 美國, 英國은 技術의 輸出이 輸入보다 커서 技術의 純輸出國인 반면 다른 6個國은 技術의 純輸入國이다. 특기할 사실은 韓國을 비롯한 필리핀, 태국 등의 開途國은 技術의 輸出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技術貿易은 일방적인 흐름임을 시사한다.

3. 技術導入의 産業別·國別 分布

우리나라는 1962~84년 기간중에 總 3,073件的 技術을 도입하여 약 10億달러를 로얄티로 지급하였는데 이중 製造業이 접하는 比重은 약 8.5億달러로 전체의 85%를 점하였다.

〈表 2〉 各國의 技術貿易

	技術輸入額 (100萬달러) (A)	技術輸出額 (100萬달러) (B)	國民總生産額 (10億달러) (C)	輸出入總額 (10億달러) (D)	A/C (%)	A/D (%)
미 국	552.8 ²⁾	7,660.7 ²⁾	3,661.3 ¹⁾	559.1 ²⁾	0.02	0.10
일 본	1,981.9 ²⁾	569.0 ²⁾	1,156.3 ²⁾	305.9 ²⁾	0.17	0.65
영 국	783.2 ⁵⁾	992.5 ⁵⁾	459.2 ²⁾	198.6 ²⁾	0.17	0.39
서 독	948.2 ⁴⁾	484.5 ⁴⁾	654.6 ²⁾	324.7 ²⁾	0.15	0.29
프 랑 스	836.6 ³⁾	436.3 ³⁾	568.7 ²⁾	201.3 ²⁾	0.15	0.42
필 리 핀	72.0 ⁵⁾	n.a	39.4 ²⁾	11.7 ²⁾	0.18	0.62
태 국	45.0 ⁵⁾	n.a	40.4 ²⁾	17.8 ³⁾	0.11	0.25
한국(1984)	213.2 ¹⁾	n.a	79.0 ¹⁾	59.9 ²⁾	0.27	0.36
한국(1983)	149.5 ²⁾	n.a	73.4 ²⁾	506.0 ²⁾	0.20	0.30

註: 1) 1)은 1984년, 2)는 1983년, 3)은 1982년, 4)는 1981년, 5)는 1980년의 數值임.

2) 필리핀의 技術輸入額은 외국기술자에 대한 邦급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한 것이며, 태국의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않음.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日本科學技術廳, 『科學技術白書』, 1984.

PECC,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 Report by the Task Force*, Bali, Indonesia, 1983.

〈表 3〉 産業別 年度別 代價支給現況

(단위 :千달러)

	1962~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농·축	2,038.5	408.2	790.7	1,167.8	831.9	1,363.3	966.5	624.1	262.6	8,453.7								
업·적	2,039.5	651.1	434.7	506.4	612.9	1,106.0	1,341.6	2,397.2	3,309.1	12,398.5								
프·지·적·업·유	111.7	699.2	639.7	117.5	21.7	118.1	2.8	64.0	249.9	7,781.6								
화·업·유	664.1	301.4	1,709.2	1,725.3	604.7	870.1	656.4	179.8	1,863.4	8,274.4								
소·업·유	8,700.6	4,123.9	3,727.3	4,100.2	993.2	422.6	1,127.7	4,066.5	3,468.8	30,730.8								
소·업·유	1,040.6	618.6	1,758.1	2,261.2	3,460.0	2,467.2	4,384.6	4,257.6	4,384.6	23,055.5								
정·제·금·전·기·조·통·전·기	32,631.4	21,806.5	29,384.4	29,970.3	42,952.9	23,161.2	24,344.3	19,635.8	30,152.7	245,039.5								
	284.4	261.0	152.4	65.3	83.0	87.4	382.9	1,536.8	2,838.8	6,586.5								
	23,905.6	6,436.8	10,643.5	2,459.5	7,799.0	4,634.9	4,383.9	7,271.3	7,112.3	74,650.0								
	12,801.8	7,028.0	6,204.8	8,605.1	8,921.0	16,702.7	20,202.4	30,639.1	50,179.9	161,284.8								
	14,566.5	8,142.8	8,515.9	24,959.3	21,233.6	26,477.5	20,624.2	25,103.8	49,417.6	199,041.2								
	5,091.0	1,002.1	1,519.7	2,309.4	2,916.4	3,525.3	15,734.9	17,667.7	12,581.4	62,347.8								
	5,033.0	518.4	461.4	3,865.6	4,270.6	9,584.3	7,130.1	5,708.3	7,636.0	44,208.1								
	2,759.0	3,414.4	8,679.6	4,263.7	1,076.5	7,931.8	9,991.5	21,887.0	31,147.7	91,201.2								
	2,759.0	1,741.9	1,151.4	1,453.8	8,601.5	4,758.1	3,054.1	807.3	2,707.1	24,523.8								
	725.6	899.9	3,535.6	6,403.2	2,851.7	3,843.6	2,938.4	7,660.8	5,916.6	34,777.4								
합	113,542.5	58,056.0	85,065.0	93,934.1	107,231.9	107,104.1	115,689.3	149,501.0	213,230.5	1,043,354.8								

資料 : 財務部.

〈表 4〉 國別 認可 및 代價支給現況

(단위 : 千수, 千달러)

	미		일		본		서		독		프		방		스		기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1962~76	164	29,634.8	494	63,695.1	23	8,203.4	7	1,574.3	64	10,434.9								
1977	45	17,221.6	82	25,436.9	16	2,556.6	3	483.8	22	12,357.6								
1978	67	24,201.3	157	27,978.6	12	2,342.7	9	1,064.7	51	28,978.1								
1979	61	34,216.4	157	22,766.9	17	3,272.3	8	4,254.8	45	29,423.7								
1980	54	35,532.5	124	23,230.0	10	2,808.3	9	5,731.2	25	34,926.9								
1981	74	47,981.3	109	35,395.7	15	2,532.4	11	2,740.2	38	18,454.5								
1982	68	59,463.1	164	29,348.8	14	2,357.1	16	3,663.1	46	20,537.7								
1983	76	80,774.9	199	37,116.6	20	3,755.3	11	2,693.1	55	25,185.9								
1984	99	116,144.6	215	53,137.2	35	11,037.4	22	3,663.5	61	28,648.6								
계	709	445,193.7	1,701	323,105.5	162	40,465.5	96	25,867.7	407	208,722.4								
구성비 (%)	23.07	42.67	55.35	30.97	5.27	3.86	3.12	2.40	23.24	20.0								

資料 : 財務部.

製造業中에서도 「로얄티」 比重이 큰 主要業種은 精油・化學(2.5億달러), 電子・電氣(1.6億달러), 機械類(2.0億달러)로서 이들 업종의 로얄티는 製造業全體의 71.3%를 차지하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機械類 및 電子・電氣分野에서 技術導入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非製造業에서는 電力 및 通信分野의 技術導入이 증가하고 있다.

技術導入의 國別分布를 보면 美國과 日本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 대종을 이루어 1962~82년 기간중 代價支給은 27億달러에 달하여 總技術導入費用中 73.6%를 점하였다. 이를 國別로 보면 미국은 709件에 4.5億달러, 일본은 1,700件에 3.2億달러로서 件別 로얄티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과 일본으로부터의 技術導入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産業技術白書』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 件數에 비해 代價支拂이 현저히 낮은 것은 미국에 비해 源泉技術이나 核心技術의 導入이 저조한 반면에 비교적 代價가 낮은 改良技術의 導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⁴⁾.

반면에 西獨, 英國,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등 EC會員國들로부터의 技術導入은 모두 432件으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며,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EC會員國이 아닌 유럽국가들에서 기술을 도입한 件數를 합해도 모두 491件으로 유럽국가들에서의 技術導入은 전체의 16.0%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Ⅲ. 技術導入契約의 特性和 政策的 意味

1. 技術導入契約의 特性和 條件의 決定過程

技術導入契約은 特許權, 「노우-하우」, 技術用役, 商標權 등 이전될 技術「패키지」의 內容과 그 代價에 관한 條項뿐만 아니라 技術의 使用條件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制限條項의 종류도 많으므로 그 具體的 條件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技術提供企業은 技術提供의 代價로 定額技術料(Lump-sum Fees), 經常技術料(Running Royalties), 技術支援料(Technical Assistance Fees)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資本金의 一部, 도입된 技術의 改良時 이를 義務의으로 技術提供企業에게 無償으로 供與해야 하는 Grant-back 條項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經常技術料도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支拂形態를 約定할 수 있다. 즉 經常技術料의 最少限度와 最高限度를 설정하는 방법, 販賣額의 增加에 따라 經常技術料의 比率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 輸出販賣額에 대한 經常技術料의 差等化 方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은 技術提供를 미끼로 原料, 中間材, 機械, 裝備, 部品 등을 끼워팔기 위하여, 技術導入企業이 이를 구매할 때는 技術販賣企業의 事前同意를 얻도록 하는 結付條項을 技術移轉契約書에 포

4)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産業技術白書』, 1985.

함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結付條項이 技術移轉契約에 포함되면 技術導入企業은 필요로 하는 原料, 中間材, 機械 등을 자유로이 선택해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追加的인 技術導入費用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技術提供企業은 技術移轉契約時 이전될 技術의 活用に 대한 각종 制限條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제한조항에서 대표적인 것은 輸出制限條項이며, 이는 크게 나누어 輸出을 全面禁止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수출을 하려면 技術提供企業의 事前承認을 받도록 한다든지 또는 輸出量, 輸出價格을 制限하고 技術提供企業의 商標使用을 禁止시키는 등 매우 다양하다.

輸出과 관련된 각종 制限條項 이외에도 技術導入契約의 滿了後까지 도입된 기술에 대한 秘密保障, 계약만료후 같은 製品이나 유사한 製品의 生産禁止, 競爭의 製品이나 技術의 취급금지 등 制限條項의 종류는 많다. 엄격한 品質管理條項도 때로는 制限條項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技術導入企業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品質管理基準을 적용함으로써 技術提供企業은 技術導入企業의 生産量과 販賣量을 間接的으로 統制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技術移轉의 條件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 조건은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結合될 수 있다. 왜냐하면 技術導入企業과 技術提供企業間에는 각각의 技術移轉條件에 대한 主觀的 評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條件의 相互交換을 위한 協商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技術導入의 直接的인 代價라 할 수 있는 定額技術料와 經常技術料에 대한 評價는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定額技術料는 일반적으로 技術導入契約의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一定額이므로 確實한 金額일 뿐만 아니라 現價概念이다. 이에 반하여 經常技術料는 販賣額의 一定比率을 技術料로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不確實한 미래의 販賣額에 따라 技術料의 規模가 결정되는 不確實한 미래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제공하려는 기업과 이를 도입하려는 기업간에는 主觀的 確率分布의 차이 때문에 이전될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販賣額의 評價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現金 흐름에 대한 時間的 選好度, 危險選好度 등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技術輸出企業이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國內市場과 輸出市場의 크기, 物價上昇 및 換率引上의 可能性, 생산 및 마케팅능력 등을 過小評價하면 할수록 技術輸出企業은 經常技術料보다 定額技術料를 상대적으로 選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技術輸出企業이 技術導入企業보다 미래의 불확실한 販賣額을 예측하는데 있어 主觀的 確率分布의 偏差가 크고, 現金에 대한 選好도가 높으며 危險回避的인 경우에는 經常技術料에 대한 技術提供企業의 選好도는 技術導入企業의 그것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經常技術料 대신 定額技術料 형태로 技術料를 약정하는 것이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을 동시에 더욱 만족시킬 수 있는 協商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간에는 이전될 기술의 패키지, 技術提供의 代價, 기술의 使用條件에 대한 제한 등 기술이전의 모든 條件에 대한 主觀的 價値評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조건을 相互交換함으로써 「파레토」最適性(Pareto Optimality)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技術導入契約條件의 특성과 결정과정을 分配的 側面은 도의시키고 주로 協商의 效率性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협상이란 협상당사자들간에 分配可能한 利益이 존재할 경우, 그 分配條件을 자발적으로 決定하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技術移轉協商의 경우 분배가능한 이익은 技術導入企業이 도입할 기술을 新製品開發, 原價節減 또는 品質改善 등 技術革新에 활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利益의 期待値라고 할 수 있으며, 技術의 代價인 技術料은 이를 技術導入企業과 技術提供企業간에 分割하는 하나의 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技術提供企業이 技術移轉의 代價로 認識하고 있는 技術料의 上限線은 技術導入企業이 도입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利益에 대한 技術提供企業의 評價額이다. 그러나 技術導入企業은 기술을 自體開發하거나 또는 다른 代替的인 技術提供先에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代案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技術提供企業이 技術導入企業의 最適代替案에 따른 費用以上으로 技術料를 요구할 경우 技術導入企業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技術提供企業의 입장에서는 技術導入企業의 利益에 대한 評價額과 技術導入企業의 最適代替案에 따른 費用에 대한 評價額 중에서 적은 금액을 技術移轉의 代價로 요구할 수

있는 最大値로 認識하게 된다.

技術提供企業은 技術移轉活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資源費用은 물론, 技術移轉에 따른 販賣減少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機會費用도 최소한 보상받으려고 하므로, 技術提供企業이 인식하는 技術料의 下限線은 이러한 資源費用과 機會費用의 合計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技術導入企業은 도입될 기술을 활용하여 실현할 수 있는 利益의 期待値나 또는 最適代替案에 따른 費用評價額 이상으로 기술료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두 가지 評價額中 적은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 技術代價의 上限線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技術導入企業도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려면 技術移轉活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技術提供企業의 資源費用은 최소한 지불하여야 할 비용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技術提供企業의 資源費用에 대한 技術導入企業의 評價額을 技術代價支拂의 下限線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技術代價가 합의될 수 있는 協商의 범위는 技術提供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技術代價의 下限線과 技術導入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技術代價의 上限線에 따라 결정된다. 기술의 본질은 知識이기 때문에 一般財貨와는 달리, 판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獨·寡占的 技術인 경우 技術提供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技術代價의 下限線과 技術導入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技術代價의 上限線간에는 큰 隔差가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은 매매쌍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價格協商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國際技術市場은 불완전하므로, 技術代價의 결정을 위한 協商은 매우 중요하다. 실

제의 技術代價는 技術移轉活動에 소요되는 資源費用, 技術移轉에 따른 供與者側의 機會費用을 보상하기 위한 代價 및 獨占的 利潤(Monopolistic Rent)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 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비용 중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率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Contractor는 技術供與契約의 경험이 있는 102個의 美國企業을 대상으로 技術代價의 費用構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直接費用이 전체 代價中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筆者에 의하여 114個 技術導入業體를 대상으로 設問調査하였는 바, 直接費用이 全體代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36%, 5~20% 사이인 기업은 19.1%, 20~50%는 17.2%, 51% 이상은 11%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技術代價의 대부분은 獨占利潤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政策的 意味

技術導入契約의 特性和 條件의 決定過程에 비추어 볼 때 技術導入條件을 개선하기 위한 政府의 役割에는 한계가 있다. 政府가 기업의 技術導入條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各種規制政策을 쓴다면 技術提供企業과 技術導入企業은 이전될 技術「패키지」의 內容, 技術提供의 代價, 技術의 使用制限에 대한 各種條件의 새로운 組合을 통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政府規制를 뒷받침할 수 있는 行政的인 能率性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技術導入條件의 規制政策은 實效性이 적게 된다. 또한 規制政策의 實效性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기술의 도입이 저해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政府의

介入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技術의 本質은 知識 또는 情報라 할 수 있으므로 政府가 技術導入條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政策手段은 情報의 提供이다. 關聯技術의 國內外 開發動向, 代替的인 技術 및 技術提供先, 유사한 경우의 技術導入條件 등에 관한 良質의 情報가 많을수록 기업은 技術的 必要性和 도입하여야 할 技術의 要素, 技術의 適正性 및 活用價值 등을 事前的으로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技術導入協商時 協商力도 체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企業이 유리한 條件으로 외국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하려면 기업의 協商力을 제고시켜야 하므로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代案的 方法이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국내에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國內企業間의 技術移轉 및 國內技術開發에 대한 각종 誘引政策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技術供給源이 多邊化되도록 政府次元의 技術協力도 확대·심화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技術需要에 대한 情報도 外國의 技術保有企業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協商技術에 따라 협상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技術移轉에 관한 國際協商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敎育 및 諮問活動도 강화하여야 한다.

技術을 유리한 條件으로 導入하기 위하여는 外國의 技術保有企業이 技術移轉에 따라 부담하게 될 機會費用을 減少시켜 주는 정책도 요망된다. 外國의 技術提供企業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技術移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輸出 및 外國人直接投資의 機會를 상실하게 된다는 機會費用이 발생한다. 政府는 國內

市場의 開放과 外國人 直接投資를 제한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技術移轉을 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통하여 技術提供企業의 機會費用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기술을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의 協商力을 強化시킬 수 있다.

Ⅳ. 技術導入 自由化에 따른 主要爭點과 對策

技術導入이 자유화됨에 따라 導入件數 및 代價支給이 급증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導入技術에 대한 代價支給은 1984년에는 213百萬달러에 이르러 國際收支上 중요한 赤字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의 技術導入은 우리의 競爭力을 향상시키기보다는 輸入이 禁止된 상품에 대한 貿易障壁의 迂廻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國民經濟上 이롭다고 생각되지 않는 技術導入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어 同一技術의 重複導入, 落後技術의 導入, 단순한 商標의 導入 등에 대하여 政府가 적절히 규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一部 學者나 關係專門家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技術導入의 自由化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업이 技術導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國內의 自體開發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危險性이 높은 국내 기술개발보다는 손쉬운 技術導入을 선호하나, 국내의 기술개발이 技術

導入보다는 다른 기업에로의 技術擴散效果가 높고 국내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國家的인 側面에서 볼 때는 自體開發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技術導入과 自體開發간에 존재하는 外部效果의 差異를 內部化(internalize)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연하면 自體開發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金融稅制上的 支援과 技術導入費에 대한 支援에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本章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爭點, 즉 重複技術導入, 落後技術導入, 商標導入 및 技術導入의 國內 技術開發 沮害要因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具體的인 對策을 제시하고자 한다.

1. 重複技術導入

가. 爭 點

同一技術이 여러 기업에 의하여 導入되면 국가적 측면에서는 그 代價를 重複하여 지불하므로 이를 規制하는 것이 國民經濟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同一技術을 여러 기업이 갖게 됨에 따라 技術이 廣範圍하게 波及되며 企業間的 競爭을 促進하게 되므로 規制를 할 필요가 없다는 見解가 對立되고 있다.

나. 實 態

技術 및 商標導入實態의 深層分析 및 向後對策에 관한 調查研究에 의하면⁵⁾ 1981년과 1983년 사이에 도입된 총 915건의 技術中 603건의 技術導入契約書를 대상으로 分析한 결과 商標實施權을 除外한 총 551件中 126件的 技術이 중복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를 產業別로

5) 韓國科學技術院, 『技術 및 商標導入實態의 深層分析 및 向後對策에 관한 調查研究』, 科學技術處, 1985.

〈表 5〉 技術導入 重複件數

	2件 重複	3件 重複	4件 重複	5件 重複	8件 重複
機 械	3	3			
電 氣・電 子	5	7	6	4	1
化 工	8	2	1		
其 他	1				

分類하건 〈表 5〉와 같다.

重複技術導入의 現況은 實施權類型別로 보면, 特許實施權이 電氣・電子分野에 9件(導入件數는 31件)이며, 「노우-하우」實施權에는 電氣, 電子의 重複技術導入이 14件, 化工分野 11件, 機械分野 6件으로 集中되어 있어 대부분의 重複技術導入이 「노우-하우」實施權契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評 價

이와 같은 論爭의 解決을 위하여는 技術導入代價의 決定過程을 이해해야 할 것인바 技術市場이 競爭의인 경우와 獨寡占의인 경우로 分類하여 검토하여 보자. 먼저 導入技術이 競爭의 市場與件下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입에 따른 代價중 獨占의 利潤의 構成比는 매우 낮아 그 크기가 기술자의 派遣 등 技術指導에 소요되는 直接費用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만약에 기술의 重複導入을 禁止하여 처음으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優先權을 갖고 이를 국내의 타기업에게 再移轉하게 되는 상황을 假定하더라도 이와 같은 費用의 대부분은 소요될 것이다. 다만 그 差異點은 外貨가 중복되어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國內의 資源이 技術의 再移轉에 소요되므로 資源分配上的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 오히려 기술의 重複導入禁止는 기술의 광범위한 普及를 저해하고 競爭을 制限하여 資源分配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導入技術이 獨占의 市場에서 공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技術導入의 代價는 直接費用뿐만 아니라 獨占利潤까지 포함되며 이러한 獨占의 利潤의 크기는 技術導入者가 技術導入을 하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利潤의 크기에 比例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重複技術導入이 許容되지 않는다면 최초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獨占의 位置에 있게 되므로 이에 따르는 利潤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技術導入 協商에서 市場支配力이 큰 技術供與企業은 契約을 통해 이와 같은 利潤은 대부분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과다한 로얄티 支給의 원인이 될 것이다. 반면에 重複되어 기술이 도입된다면 同一技術導入業體間의 競爭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利潤도 작아지며 技術代價 또한 작아질 것이다. 寡占市場에서 모든 寡占企業의 利潤의 合은 그 시장이 一個企業에 의하여 독점됐을 때 一個企業의 이윤보다도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結論的으로 重複技術導入을 금지하면 技術導入의 代價가 오히려 増大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重複技術導入을 禁止하는 데 따른 得과 失을 검토한 결과 이를 금지하면 技術의 代價支給이 오히려 늘어날 염려가 있는 동시에 技術의 광범위한 擴散을 阻害하고, 競爭制限에 따른 國內市場의 獨占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重複技術의 導入에 관한 規制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落後技術 導入

가. 爭 點

落後技術의 導入에 대하여는 外資導入法上

에서 이를 禁止하고 있다. 즉 同法 24條의 4項에 의하면 “導入하고자 하는 技術의 內容이 낮은 水準이거나 뒤떨어진 技術인 경우” 申告를 수리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다. 또한 技術振興審議會 등에서는 技術開發支援政策을 수립·검토하는 과정에서 技術導入自由化에 따른 落後技術의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技術的 效率性이란 측면에서 落後技術보다는 先進技術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때문에 이러한 問題가 제기된 것 같다. 그러나 經濟的 效率性 側面에서는 선진국에서의 落後技術이 우리의 與件에 더욱 適合하여 보다 저렴한 費用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落後技術導入의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여 적절한 對策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나. 實 態

産業技術振興會의 研究에 의하면⁶⁾ 導入技術의 水準이 製品週期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조사한 結果 다음과 같은 分布를 얻었다.

〈表 6〉 導入技術의 水準

(단위: 件, %)

	計	商業化 以 前	商業化 時 期	成長前期	成長後期	成熟前期	成熟後期	衰退期
應 答 數	462	8	15	78	98	150	95	18
比 率	100	1.7	3.2	16.8	21.2	32.4	20.5	3.9

〈表 7〉 導入技術이 최초로 개발된 時期

(단위: 件, %)

	計	1年 以內	1~3年	3~5年	5~10年	10~20年	20年 以上
應 答 數	445	5	48	101	135	88	78
比 率	100	1.1	10.5	22.2	29.7	19.3	17.1

〈表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成熟期 이후의 技術이 56.8% 이상이 되어 소위 ‘落後技術’이 많이 導入되고 있다. 또한 同研究에 의하면 導入技術이 최초로 개발된 時期는 〈表 7〉과 같은 分布를 보이고 있다.

즉 導入技術이 開發된 時期에 있어서 5년 이상 경과된 技術이 66.1%에 해당되어 導入技術이 最尖端技術이라기보다는 既存技術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對 策

導入技術을 評價함에 있어서는 技術의 適正性和 代價支給의 兩面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先進國의 技術은 自國의 市場需要와 要素賦存比率에 알맞게 개발된 技術이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先進國에서는 自動化되고 부수적인 機能이 많이 추가된 高價品에 대한 市場需要가 크므로 이에 알맞는 製品技術이 사용된다. 반면에 開發途上國에서는 附隨의인 機能은 되도록 제거하고 必須의인 機能만을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製品에 대한 需要가 더 클 수 있

6)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技術導入實態에 관한 深層研究』, 調查資料 24, 1985. 3.

으므로 先進國의 製品技術은 開發途上國의 市場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은 要素賦存率의 차이가 있어 適正한 技術도 다르다.

즉 技術이란 勞動, 資本 등의 生産要素를 결합하여 産品을 生産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바 生産要素를 相對價格에 따라 비용을 최소로 하는 生産要素의 結合方法은 달라진다. 資本이 勞動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先進國에서 費用을 最小化하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방법은 노동이 풍부한 開發途上國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開發途上國에서는 先進國에 비하여 勞動集約的인 方法에 의하여 生産하는 것이 效率性이 높다. 예를 들어 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에서는 半自動技術이 完全自動式 技術보다 경제적이 수 있다는 뜻이다. 産品의 壽命週期理論에 입각하여 보더라도 開發途上國, 또는 中進國에서 落後技術이 도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開發途上國의 技術革新過程을 보면 先進國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 즉 技術革新이 産品週期를 따라 新技術이 출현하고 다음으로 成長期를 거쳐 成熟期에 이르는 過程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成熟期에 이른 低位技術이나, 成長期의 技術을 消化, 吸收, 改良하는 段階를 거친다. 따라서 우리 經濟의 發展段階에 비추어 볼 때 성장기나 성숙기 이후의 技術, 즉 落後技術이 도입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技術의 代價支給面을 보더라도 落後技術은 競爭의 市場 條件하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技術導入 業體를 대상으로 한 訪問調査에서도 技術의 代價 중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은 개발

시기가 오래된 것일수록 낮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企業의 必要에 의하여 도입되는 技術은 모두 有用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그 內容이 뒤떨어졌다고 도입을 억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具體的인 政策의 改善 方案으로서 外資導入法의 第24條 4項은 削除되어야 하며 技術導入이나 外國人投資의 審査에 있어서도 落後技術의 導入에 대한 規制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商標導入

가. 爭 點

商標權의 導入은 대부분 輸入이 제한된 商品의 輸入障壁迂廻手段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수입이 제한된 품목은 그 稀貴性 때문에 이를 국내에서 한정된 업체가 생산·공급하게 되면 이에 따른 獨占的 利潤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獨占的 利潤은 대부분 技術導入代價로서 商標權者에게 흡수되며 과다한 技術料 지급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商標權導入은 産品의 디자인이나 패턴, 패턴 등 最新의 技術情報를 신속히 입수하여 우리나라 産品의 전반적 技術水準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킨다는 長點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商標權導入의 得失을 따져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 實 態

技術導入중 商標權이 포함된 契約의 年度別, 産業別 國別分布는 <表 8>과 같다. 技術導入 契約書에 의하면 商標權의 導入이라 하여도 商標權만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技術情報와

〈表 8〉 商標權 導入現況

(단위 : 件)

	1981			1982			1983			1984		
	전체	상표권	상표권+특허권									
전 산 업	247	17	51	308	38	34	360	15	43	432	44	49
음 식 료	15	—	6	23	1	2	26	1	—	30	7	4
섬 유	13	1	2	30	16	2	37	3	3	36	13	3
화 학	43	6	10	46	9	6	45	3	10	76	4	17
금 속	17	—	2	25	—	1	28	1	3	32	3	3
기 계	91	8	23	79	8	14	106	6	18	130	11	14
전 차	44	1	4	76	1	8	88	1	8	81	2	2
건 설	5	—	1	8	—	—	9	—	—	11	—	—
기 타	19	1	3	21	2	1	21	—	1	36	3	86
일 본	109	8	17	164	15	11	199	8	17	214	15	17
미 국	74	3	17	68	6	16	76	4	11	99	15	15
서 독	15	2	4	14	4	—	20	—	3	35	3	3
프 랑 스	11	1	3	16	2	2	10	—	—	23	6	4
영 국	12	1	4	14	9	2	13	1	4	14	1	3
기 타	26	2	6	32	2	3	42	2	8	47	4	7

資料 : 韓國科學技術院, 『技術 및 商標導入實態의 深層分析 및 向後對策에 관한 調査研究』, 科學技術處, 1985.

資料, 技術指導, 技術用役, 敎育訓練, 特許權 使用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商標權의 導入인지 商標權과 技術이 함께 수반 되어 도입되는 것인지의 판단은 어렵다. 〈表 8〉에서는 商標權과 特許 이외의 다른 技術이 포함된 契約을 商標權으로 분류하고 商標權과 特許權이 동시에 포함된 契約을 商標權+特許權으로 分類하였다.

特許權이 포함되지 않은 1981~82年 기간중 總52件의 商標權導入의 內容을 분석한 결과, 商標權實施料는 定額技術料의 형태로 일시 지불한 경우가 19.2%, 經常技術料로 지불한 경우가 71%, 定額技術料와 經常技術料를 함께 지불한 경우가 9.6%이며, 定額技術料의 支給規模는 평균 20萬달러이며 經常技術料는 매출액의 3%가 10件, 3~5%가 17件, 그리고 5% 이상이 20件으로 분포되고 있다. 契約條項을

보면 輸出禁止條項이 39件으로 전체의 70.9%이며, 經營에 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9件, 實施權許與者가 原料購入을 制限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경우가 3件이다.

둘째, 商標權의 導入은 대부분 內需市場 確保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向上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商標權의 導入時 70%에 해당되는 契約에 輸出禁止條項이 삽입되어 있어 대부분 內需爲主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商標權 導入에 부수된 輸出義務條項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 對 策

現行 技術導入 審査基準에 의하면 技術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商標權의 導入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단

순한 商標의 導入인지 技術이 수반되어 들어 오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 단순히 商標權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일지라도 이와 같은 審査基準을 우회하기 위하여 技術導入이 수반된 것처럼 위장하기는 용이하나 이를 政策當局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심사기준의 實效性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商標權導入은 이에 따른 로얄티의 증가뿐 아니라 다른 問題點을 야기한다. 첫째, 商標權과 수반되어 도입되는 기술은 대부분 消費財產業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의한 製品의 差別化(product differentiation)는 國民經濟的 観点에서 볼 때 꼭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다. Lancaster에 의하면⁷⁾ 製品의 과도한 差別化는 價格競爭을 저해하여 資源의 效率的 이용을 저해한다는 假說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國民所得과 비교하여 適正하지 않는 商品의 消費를 조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技術이 수반되지 않은 商標權導入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現行審査方法에 의하여는 이를 효율적으로 對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政策代案이 가능하다.

- 1) 商標導入의 全面禁止
- 2) 選別的 商標導入의 承認
- 3) 外國商標 부착상품에 대한 特別消費稅, 또는 外國商標稅 賦課

代案 1)은 自由化施策에 역행하여 對外的으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輸出을 목적으

로 하는 商標權導入 등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치는 既導入된 商標에 대하여 賣出을 증가시켜 代價支給節減에 별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競爭을 저해하는 副作用이 있을 것이다.

代案 2)는 철저히 시행된다면 좋은 對策이 되겠으나 그 選別基準이 애매할 수밖에 없어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한다.

代案 3)은 외국에서 도입된 商標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特別消費稅, 또는 外國商標稅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 판단된다.

도입된 상표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에 稅金을 부과하는 것은 輸入物品에 대한 國稅賦課와 서로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貿易의 전면적인 自由化 以後에도 필요한 조치이며 導入된 商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輸出에 대하여는 稅金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商標가 導入된 製品의 價格은 獨占的 市場與件에서 형성되며 그 價格과 製品의 生産費用과의 차이의 대부분이 로얄티로써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特消費稅 또는 商標稅 賦課에 따른 租稅負擔의 대부분은 外國의 導入先에 전가될 수 있을 것이다.

4. 技術의 導入과 自體開發

가. 問題의 提起

技術을 필요로 하는 企業은 기술을 자체에서 開發할 수도 있고 외국으로부터 導入할 수도 있다. 즉 利潤을 極大化하는 企業의 입장에서는 각 수단이 내포하고 있는 得과 失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단을 選定

7) Lancaster, K. "Socially Optimal Product Differen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75, pp. 567~585.

하게 된다. 이와 같이 技術導入과 自體技術開發의 선택이 기업의 이익에서 고려한 社會的福祉(social welfare)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技術導入이나 自體開發에 따르는 外部效果가 없다면 위의 命題는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도입이나 자체개발은 해당된 企業 그 自體만 이에 따른 혜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여타의 기업에게도 技術을 傳播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더우기 그 外部效果는 자기 다르다. 自體開發은 국내기업이 技術開發에 직접 간여함으로 關聯研究者의 잠재능력을 키워 주며 그 開發過程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競爭企業이나 關聯企業에로의 技術擴散이 技術導入보다는 용이하다. 따라서 自體開發이 技術導入보다는 더 큰 外部效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技術導入과 自體開發間에는 이와 같은 기술의 파급에 있어서 존재하는 외부효과 차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差異點도 있다. 첫째, 技術導入에 의존하면 資源이 외국으로 移轉되며 後者は 國內의 研究開發에 투입된다. 따라서 國際收支面에서 볼 때 自體開發이 유리하다. 둘째, 自體開發이 技術導入보다 危險性이 높아 기업은 技術導入을 선호한다. 技術導入은 어떤 종류의 기술을 어떤 代價에 의하여 얻게 되느냐가 확실한 반면 自體開發은 投資에 대한 成果가 분명치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危險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單位 投資에 대한 期待收益率이 같다면 위험이 적은 技術導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社會的 期待收益이 낮은 技術導入을 기업이 선호하게 됨에 따라 資源分配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結論的으로 기업의 技術導入과 自體開發이라는 두 가지 수단의 選定過程에서 기업은 국민경제상 보다 유리한 自體開發보다는 技術導入 쪽으로 偏向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外部效果를 補正하여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나 현행 技術開發 支援政策에는 이에 대한 조치가 國產 新技術製品의 保護 이외에는 全無한 실정이다. 즉 技術開發費에 대한 租稅減免規制法상의 혜택에서도 技術導入費와 國內의 研究開發費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稅制·金融上的 惠澤에서 兩者間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對 策

위에서 설명한 技術導入과 自體開發 양수단 간에 존재하는 外部效果를 補正하여 줄 수 있는 대책은 그 외부효과 차이만큼을 政府에서 補助하여 주는 것이다. 技術導入과 自體開發은 代替的인 성격뿐만 아니라 相互補完的인 성격을 지닌 兩面性이 있기 때문에 技術導入 그 자체를 규제하면 自體開發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은 稅制·金融上的 惠택에서 技術導入費와 自體의 研究開發費에 差等を 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現行 技術 및 人力開發費의 稅額控除에서 國內의 研究開發費와 技術導入費를 구분하여 稅額控除率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技術支援金融에 있어서도 差等を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國產新技術製品의 保護措置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현행 技術開發 支援政策상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施行上 많은 問題點이 있어서 위에서 언급된 稅制·金融上的 支援에서

差等を 주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

現行 國產 新技術製品에 대한 보호는 技術開發促進法에 의거한 것으로 國產 新技術製品에 대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審査를 거쳐 類似品의 輸入規制, 同一製品의 重複製造 規制 및 同一技術導入禁止, 需要創出을 위한 資金支援 및 政府의 優先購買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同制度는 극히 제한되게 운영되어 1978년에 施行되기 시작한 후 1984년 말까지 모두 8件의 技術開發에 대하여서만 조치가 취해졌다. 同制度가 이와 같이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原因은 이 조치가 갖는 競爭制限의 性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自體開發의 促進과 競爭制限이라는 두 가지 政策目標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이 매우 保守的으로 된 것이다. 同制度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하여 여기에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 同制度만으로는 技術導入과 自體開發에 존재하는 外部效果를 內部化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된 技術導入費와 研究開發費에 대하여 稅制·金融上의 支援에서 差等化하는 정책은 國產 新技術製品의 保護措置와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要約 및 向後 政策方向

技術導入契約의 特性和 條件의 決定過程에 비추어 볼 때 政府가 企業次元에서 이루어지는 技術導入을 規制함으로써 도입될 技術의 質과

條件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制限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不適正한 規制政策으로 인하여 經濟發展에 필수적인 技術의 導入이 저해될 우려는 크므로, 技術導入은 企業의 自律的 判斷에 맡겨 이를 自由化하여야 한다. 政府는 기업이 스스로 적정한 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유리한 條件으로 도입하는 데 有用하게 활용할 수 있는 情報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技術導入에 관한 企業의 協商力을 제고시키는 선에서 그 役割을 限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技術導入自由化와 관련된 여 제기될 수 있는 네가지 문제점을 검토한바, 技術의 重複導入이나 落後技術의 導入에 대하여는 특별한 規制措置가 불필요하다는 結論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國內市場을 目標로 한 商標權의 導入에 따른 問題點과 技術導入의 自由化에 따른 自體開發의 沮害現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政策的 補完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外國商標의 附着商品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賦課하거나 또는 商標稅를 新設하는 方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技術導入의 自由化에 따른 自體開發의 沮害可能性을 줄이기 위하여는 技術導入費에 대한 稅制·金融上의 惠澤과 국내의 研究開發投資에 주는 혜택에 차이를 두어, 기업으로 하여금 技術導入보다는 自體開發이 선호되도록 誘引政策을 強化하여야 한다.

技術導入政策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은 外國人直接投資政策과의 聯關性이다. 일반적으로 外國人直接投資는 資本이 導入되는 것이며 技術導入은 技術이 導入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政策의 樹立過程에서 그들은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그러

나 外國人直接投資와 技術導入間의 根本的인 差異點은 별로 없다. 直接投資의 가장 중요한 動機는 自國에서 개발된 技術을 現지에서 이 용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外國人投資에 따른 資本移動 側面은 부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資本의 移動만을 위한 것이라면 直接投資 보다는 間接投資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技術을 보유한 外國기업의 입장에서는 「라이센싱」 등 技術移轉契約보다는 外國人直接投資를 통해 技術로 인한 獨寡占의 地位와 利潤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므로 外國人直接投資를 選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技術을 도입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技術的 要素만을 分離, 導入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費用으로 技術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短期間內에 土着化, 擴散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技術導入은 外國人投資에 선행하여 自由化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外國의 技術保有企業이 가급적 「라이센싱」

등 技術移轉契約를 선호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外國人投資를 금지하여 技術移轉契約으로 誘導하는 政策은 바람직하지 않다. 尖端技術을 보유한 기업은 輸出이나 直接投資를 통하여야만 國內市場에 進出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尖端技術의 移轉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外國人直接投資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租稅減免制度 등은 再檢討할 필요가 있다.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은 外國의 技術保有企業으로 하여금 技術移轉契約보다 直接投資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技術 등 必要要素만의 分離導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外國人企業에 대한 租稅減免으로 인하여 租稅損失뿐만 아니라 內國人企業과의 衡平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內需市場規模도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技術導入을 위한 기업의 協力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制度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政策調整局, 『國產新技術製品 保護制度에 대한 檢討』, 1985. 2.

_____, 『技術開發支援制度에 대한 檢討』, 1984. 12.

金榮損, 「技術導入契約에 관한 實態分析」, 『技術移轉』, 韓國科學技術院, 1983. 1.

朴宇熙, 「韓國에 있어서의 輸入技術의 吸收와 擴散에 관한 實證分析」,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6.

裴茂基, 「技術의 導入, 受容 및 擴散」, 『經濟

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3.

邊衡尹, 「韓國鐵鋼工業의 技術蓄積」,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0. 6.

李軫周, 「産業類型別 技術移轉 및 土着化過程과 方向」, 『技術移轉』, 韓國機械研究所, 1985. 1.

日本科學技術廳, 『科學技術白書』, 1985.

吳鄧根, 「衣類産業과 海外商標導入」, 『技術移轉』, 韓國科學技術院, 1982. 4.

財務部, 「技術導入의 促進方案」, 政策資料,

1985. 3.
- 全淳新, 「技術導入契約을 둘러싼 諸問題」, 『技術移轉』, 韓國機械研究所, 1984. 10.
- 韓國科學技術院, 『技術 및 商標導入實態의 深層分析 및 向後對策에 관한 調查研究』, 科學技術處, 1985. 5.
-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技術導入實態에 관한 深層研究』, 1985. 7.
- _____, 『產業技術白書—技術과 產業의一體化』, 1985.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 Lancaster, K., “Socially Optimal Product Differen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75.
- Oman, C., *New Forms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D/R (83)7, OECD, 1983.
- PECC,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 Report by the Task Force*, Bali, Indonesia. 1983.
- Rothwell R. and W. Zegveld, *Industrial Innovation and Public Policy*, 1981.
- Westphal L., Linsu Kim and C. Dahiman, “Reflections on Korea’s Acquisi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World Bank Discussion Paper*, Rep. No. DRD77, April 1984.